

교원 업적평가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의 업적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 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2.3.개정)

제2조(교원 업적평가 위원회 구성) 교원 업적평가 위원회는 총장이 5명 이상의 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한다. (2018.2.27.개정)

제3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교원 업적평가 대상은 전임교원으로 하며, 비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2012.2.16.개정)

② 교원 업적평가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업적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 중 6개월만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는 해당학기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며, 하반기 임용자의 책임수업시수의 경우 전년도 2학기과 해당년도 1학기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2022.12.7.개정)

제4조(평가 영역 및 영역별 평가요소) 교원 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으로 구분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2017.2.27.개정),(2017.12.29.개정),(2022.12.7.개정)

①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수업, 실습 및 실기)와 교내외를 통한 학생 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교육영역 평가요소는 강의와 학생지도 및 교원개발 성과를 그 대상으로 한다. (2022.12.7.신설)

② 연구는 해당 전공 및 중점평가 영역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를 의미한다. 연구영역 평가요소는 논문·저서 등을 비롯한 제반 연구 활동의 성과를 그 대상으로 한다. (2022.12.7.신설)

③ 봉사는 수상실적과 지식 및 경험을 교내외에 제공·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봉사영역 평가요소는 교내외 봉사 업적 및 대학발전 기여실적을 그 대상으로 한다. (2022.12.7.신설)

제4조의2(중심평가영역)

① 교원은 중심평가영역을 정하여 해당 중심평가영역(교육영역, 산학협력영역, 행정영역 중 1영역) 위주로 평가받는다.(2022.2.10.개정)

② 임용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최초 재임용 평가까지 교육영역으로 평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2.2.10.개정)

③ 중심평가 영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 공고 절차에 따라 중심평가영역 변경 신청서(별지서식 1)와 중심평가영역 변경 심사 실적내역 및 계획서(별지서식 2)를 제출한 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2022.2.10.개정),(2022.12.7.개정)

제5조(평가 유형 및 가중치) 업적평가는 각 영역별 비중의 차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며 교육 중점교원의 경우 교육 45, 연구 45, 봉사 10으로 산학협력 및 행정중점교원의 경우 교육 10, 연구 45, 봉사 45로 나누어 실시한다. (2012.2.16.개정),(2022.12.7.개정)

제6조(업적평가의 활용) ①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표창 심사, 연구년 선정, 학술연구비 지원, 정년전환심사 및 우수교원 포상, 징계 등의 근거로 활용한다. (2017.2.27.개정),(2019.07.23.개정),(2019.8.28.개정)

② 업적평가가 우수한 교원(전임, 비전임 포함)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른다.(2021.1.25. 개정)

제7조(중복 업적평가의 금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동일 영역 내에서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2017.3.15.개정)

제8조(평가 절차) ① 대상 교원은 교학처의 공지 일정에 따라 본인의 연구 및 봉사 업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2016.2.29.개정),(2017.3.15.개정),(2018.8.24.개정),(2022.12.7.개정)

② 삭제 (2017.3.15.)

③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교원 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업적을 확정한다.

④ 확정된 업적평가서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에 개별 교수에게 통보한다.

⑤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2019.8.28.개정)

제9조(업적 평가 기록의 관리) 교학처장은 평가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별 통지 이외에는 대외비로 취급한다. (2016.2.29.개정),(2018.8.24.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별표1> 교육업적평가기준의 수업평가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제4조의2에서 행정중점영역으로 평가받는 대상자는 2021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3.08.02.개정)

1. 교육업적평가기준 - 교육 중점교원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준 점수	비 고
책임수업 시수	책임수업시수 초과		10	
	책임수업시수 충족		5	
	책임수업시수 부족		-10	
수업평가	기 본		5	
	전체 상위 10% (단, 전공인 경우 총 재학정원 80% 이상 수강한 경우만 적용, 교양인 경우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함)		+10	가점
	75점 이하		-10	감점
수업관리/성적관리 엄정성	각종 수업 관련 서류 제출 (수업/휴보강/ 휴강/보강 신청서 및 계획서/CQI보 고서 등)	기한 내 입력 및 제출	10	
		기한 이후 입력 및 제출	-5	감점
		미제출	-10	감점
	강의 충실도	학기당 0-1회 결강	10	
		학기당 2회 이상 결강	-5	감점
	수업 모니터링	무단 결강, 강의시간 및 강의실 변경 - 1차 적발	-5	감점(건당)
		무단 결강, 강의시간 및 강의실 변경 - 2차 적발	-10	감점(건당)
	성적평가	성적정정사례 무	10	과목당 성적
		학기당 성적정정사례 1-2회	8	평가조사
		학기당 성적정정사례 3회 이상	5	* 참조
	성적보고서 및 전자출결 (전수조사 적발시)	규정대로, 기한 내 입력 및 제출	5	
규정 미비 및 기한 후 입력 및 제출		-5	감점	
온라인 수업 관련 규정, 지침 준수	규정, 지침 미준수 적발 및 원격수업모니 터링 미참여 시	-5	감점	
학생상담 및 지도	학생상담프로 그램 입력	연간 260건(130*2학기) 이상 지도 (전체 학생수 대비 상담실적을 1/N로 나눠 산정함)	20	- 연인원으 로 계산 - 중복학생 인정
		연간 260건(130*2학기) 미만 지도 (전체 학생수 대비 상담실적을 1/N로 나눠 산정함)	10	- 프로그램 입력 실적물 로만 인정함
	비교과지도	학생 취업지도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5 3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준 점수	비 고		
		학생 창업지도 실적	3건 이상	5	센터에서 증빙된 실적만 인정함	
			3건 미만	3		
		도전학기제 지도실적 -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책임지도교수 1학기 3명 이상 지도시		5		
		학위논문 지도 실적 (건당)		5		가점
		재학생을 공동저자로 등재(후보지)지 이상 게재 시 (건당)		3		가점
		학술대회 논문지도 실적(건당)		0.5		가점
		Jump up+ 학습공동체 지도 시 - 튜터링 및 동아리 활동 진행에 있어 한 학기 지도하며, 지도교수는 조력자로서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교수 2회 이상, 5시간 지도)		5		지도 실적은 교수 학습역량개발센터에서 증빙된 실적만 인정함
	산학 교육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지도교수	4	가점	
수상			4	가점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5	가점		
교육 부가 활동	강의 공개	KOCW 강의동영상 공개 (1과목 이상, 연간 2회 인정)	영상공개	6	가점	
			마이크로콘텐츠 제작	5		
			ppt, 한글	4		
		KOCW 강의동영상 미제출 *2019학년도부터 2년에 1편 적용		-3	감점	
	교육행사 참여도	교직원 예배, 전체 경건회(화요일), 교수회, 교수 및 구성원 참여 요청 행사 (불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당)		-2	감점	
		교수법 특강, 수업코칭,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역량강화특강	참석시	0.5	가점 (최대 10점)	
			불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0.5	감점 (최대 -5점)	
	무단 외부출강 및 행사	허락을 득하지 않은 외부 출강 및 행사 참석 (건당) ※ 학회참석은 사전에 교학처장에 보고 후 참석 원칙 ※ 행사는 증빙자료(초청장, 행사계획 등) 제출이 원칙		-5	감점	
국외 여행	사전 보고하지 않은 국외 여행 (건당)		-5	감점		
교육 질 개선 노력	강의 개선	수업분석컨설팅 참여 (연 1회 이상)	triangle 수업컨설팅 참여 (연 2회 이상 모두 참여)	6	가점	
			triangle 수업컨설팅 중 2개 프로그램에만 참여 (연 2회 이상 모두 참여)	5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준 점수	비 고
		triangle 수업컨설팅 중 1개 프로그램에만 참여 (연 2회 이상 모두 참여)	4	
		triangle 수업컨설팅 미참여	-5	감점
	교과목 인증제	우수/심화 인증 교과목	6	-가점
		기본인증 교과목	5	-인증제 교과목 실적은 인증담당 부서에서 증빙된 실적에 한함
신규 교과목 개발	학부, 대학원의 신규교과목 개발	3	사전에 대학의 요청에 의해 양식과 기준에 맞추어 개발된 경우에 한함	
학과평가 점수	전체 학과 평가 점수의 20%			학과평가 시행 학과
학과평가 미시행 교원	신입생충원율 (정원내 전체)	100% 이상	7	업적평가
		90% 이상	6	전학년도
		90% 미만	0	기준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전체)	100% 이상	7	해당학년도
		90%이상	6	4월 1일
		80%이상	5	
		80%미만	0	기준
	중도탈락률 (전체)	10% 이상~13% 미만	-2	해당학년도
		13% 이상~16% 미만	-4	정보공시
		16% 이상	-6	기준 제적생
	취업률 (전체)	80%이상	4	직전년도 대
		70%이상	3	학 정보공시
		60%이상	2	자료 (12월
50%이상		1	31일 기준)	
40%미만		0	취업률	
전임 교원 강의 비율 (전체)	70%이상	2	해당학년도	
	70%미만	1	4월 1일 기준	
상벌	교내 수상(이사장)		+8	
	교내 수상(총장)		+5	
	징계(정직)		-10	
	징계(감봉)		-8	
	징계(견책)		-5	
	총장 주의, 경고		-2	

※ 점수 산정 방법: 취득점수/100 x 45

* 참조 : ① 전공 주임교수가 학과와 학생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서와 교학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첨부하면 성적정

정 시 개별과목 교수의 업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교목처에서 평가하는 경건회와 교회별로 실습평가서가 따로 오는 교회실습의 경우 성적 정정이 교수 업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2.2.16.개정),(2012.12.3.개정),(2013.7.29.개정),(2016.2.29.개정),(2017.2.27.개정),(2017.3.15.개정),(2017.5.8.개정),(2017.11.10.개정),(2017.11.20.개정),(2017.12.29.개정),(2018.8.24.개정),(2018.9.10.개정),(2018.12.12.개정),(2019.2.19.개정)(2019.07.23.개정),(2020.5.13.개정),(2020.8.5.개정),(2022.2.10.개정),(2022.12.7.개정)

2. 교육업적평가기준 - 산학협력 중점교원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준 점수	비고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학연계 인력양성 (성인학습자 유치)	3명 이상	30	산학협력 활동 실적은 산학협력단에서 증빙된 실적만 인정함	
		2명	20		
		1명	10		
		현장실습 지도 실적 (실습 및 실무교과 9학점 이상)	20		
		현장실습 지도 실적 (실습 및 실무교과 9학점 미만)	10		
		산학협력 캡스톤디자인 지도	10		
		학생 창업 지도 실적 (3건 이상)	10		취창업 지도 실적은
		학생 창업 지도 실적 (3건 미만)	5		취·창업지원센터에
	학생 취업 지도 실적 (3건 이상)	10	서 증빙된 실적만 인정함		
	학생 취업 지도 실적 (3건 미만)	5			
교육 부가 활동	교육행사 참여도	교직원 예배, 전체 경건회(화요일), 교수회, 교수 및 구성원 참여 요청 행사 불참 (불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당)	-2	감점	
		교수법 특강, 수업 코칭, 취·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 담역량강화특강	참석시 불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0.5 -0.5	가점 (최대 10점) 감점 (최대 -5점)
		무단 외부출강 및 행사	허락을 득하지 않은 외부 출강 및 행사 참석 (건당) ※ 학회참석은 사전에 교학처장에 보고 후 참석 원칙 ※ 행사는 증빙자료(초청장, 행사계획 등) 제출이 원칙	-5	감점
		국내외 여행	사전 보고하지 않은 국내외 여행(건당)	-5	감점
	학과평가 점수	전체 학과 평가 점수의 20%			학과평가 시행 학과
학과평가 미시행 교원	신입생총원율 (정원내 전체)	100% 이상	7	업적평가 전학년도 기준	
		90% 이상	6		
		90% 미만	0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준 점수	비고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전체)	100% 이상	7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
		90%이상	6	
		80%이상	5	
		80%미만	0	
	중도탈락률 (전체)	10% 이상~13% 미만	-2	해당학년도 정보 공시 기준 제적생
		13% 이상~16% 미만	-4	
		16% 이상	-6	
	취업률 (전체)	80%이상	4	직전년도 대학정 보공시자료(12월 31일 기준) 취업률
		70%이상	3	
		60%이상	2	
		50%이상	1	
	전임 교원 강의 비율 (전체)	70%이상	2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
		70%미만	1	
	상벌	교내 수상(이사장)	+8	
교내 수상(총장)		+5		
징계(정직)		-10		
징계(감봉)		-8		
징계(견책)		-5		
총장 주의, 경고		-2		

※ 점수 산정 방법: 취득점수/100 x 10

* 참조 : ① 학과장이 학과와 학생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과장의 확인서와 교학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첨부하면 성적정정 시 개별과목 교수의 업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교목처에서 평가하는 경건회와 교회별로 실습평가서가 따로 오는 교회실습의 경우 성적정정이 교수 업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2.2.16.개정),(2012.12.3.개정),(2013.7.29.개정),(2016.2.29.개정),(2017.2.27.개정),(2017.3.15.개정),(2017.5.8.개정),(2017.11.10.개정),(2017.11.20.개정),(2017.12.29.개정),(2018.8.24.개정),(2018.9.10.개정),(2019.2.19.개정),(2020.8.5.개정),(2022.2.10.개정),(2022.12.7.개정)

3. 교육업적평가기준 - 행정 중점교원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준 점수	비고
------	------	----------	----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준 점수	비고
대학 교육 기여	재정지원사업 유치	3억원 이상	200	기획조정처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증빙된 실적만 인정함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100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80	
		3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0	
	대학 재정 확보 방안 계획		20	
	교수, 학습, 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도(건당)		5	최대 20점
	대학브랜드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수상 실적)		20	기획조정처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증빙된 실적만 인정함
교육 부가 활동	교육행사 참여도	교직원 예배, 전체 경건회(화요일), 교수회, 교수 및 구성원 참여 요청 행사 불참 (불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당)	-2	감점
		교수법 특강, 수업코칭,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역량강화특강	참석시 불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0.5 -0.5
	무단 외부출강 및 행사	허락을 득하지 않은 외부 출강 및 행사 참석 (건당) ※ 학회참석은 사전에 교학처장에 보고 후 참석 원칙 ※ 행사는 증빙자료(초청장, 행사계획 등) 제출이 원칙	-5	감점
	국내외 여행	사전 보고하지 않은 국내외 여행(건당)	-5	감점
	학과평가 점수	전체 학과 평가 점수의 20%		
학과평가 미시행 교원	신입생충원율 (정원내 전체)	100% 이상	7	업적평가 전학년도 기준
		90% 이상	6	
		90% 미만	0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전체)	100% 이상	7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
		90%이상	6	
		80%이상	5	
	중도탈락률 (전체)	10% 이상~13% 미만	-2	해당학년도 정보공시 기준 제적생
		13% 이상~16% 미만	-4	
		16% 이상	-6	
	취업률 (전체)	80%이상	4	직전년도 대학정보공시자료(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이상	3	
60%이상		2		
50%이상		1		
전임 교원 강의 비율 (전체)	40%미만	0		
	70%이상	2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	
	70%미만	1		
상벌	교내 수상(이사장)		+8	
	교내 수상(총장)		+5	
	징계(정직)		-10	
	징계(감봉)		-8	
	징계(견책)		-5	
	총장 주의, 경고		-2	

※ 점수 산정 방법: 취득점수/100 x 10

* 참조 : ① 학과장이 학과와 학생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학과장의 확인서와 교학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첨부하면 성적정정 시 개별과목 교수의 업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교목처에서 평가하는 경건회와 교회별로 실습평가서가 따로 오는 교회실습의 경우 성적정정이 교수 업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2.2.10.신설),(2022.12.7.개정)

<별표 2> (2009.2.9.개정),(2012.2.16.개정),(2012.12.3.개정),(2013.2.25.개정),(2017.12.22.개정),(2017.12.22.개정),(2018.12.12.개정),(2019.10.24.개정),(2020.02.25.개정),(2022.2.10.개정),(2022.12.7.개정)

1. 연구업적 평가기준-교육 중점교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논문	국제 전문학술지	SCI급/SCOPUS 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에 게재된 논문	200	
	국제 일반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로 인정되지 않은 국외 저명 학술지로 업적평가위원회를 통해 국내전문 학술지 이상의 수준이 인정된 논문	100	논문형식으로 A4 기준 15매 이상, 발행지가 외국이고 외국어로 발행된 경우만 인정
	국내 전문학술지	KCI급(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00	
	박사학위논문	학교발전 관련 박사학위논문(추가학위 취득자)	100	학업개시 6개월전 대학발전과 관련된 학교발전학업계획서[별지양식3]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발전계획추진위원회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의 제정으로 총장이 허가한 경우
	교내 논문집	신학과신앙, 루터연구	40	
	국내 일반학술지	KCI급 학술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0	
저서	국제 학술저서	국외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 저서 (ISBN)	50	
	국내 학술저서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저서 (ISBN)	50	200page 이상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저서 (ISBN)	30	150page 이상 199page 이하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일반도서 (ISBN)	20	150page 이상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일반도서 (ISBN)	10	100page 이상 149page이하
	대학교재 및 일반도서(ISBN))	10	100page 이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번역서	외국어 전공분야 학술서적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 (ISBN)	30		
산학연구	특허	캡스톤디자인 특허	150	연구책임자에 한함	
	연구비 수주 실적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비 수주 실적	3억원 이상		200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100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80
			3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0

1. 연구실적물의 인정 기준

가. 논문 게재 실적

- 1) 저자수가 1인(n=1)일 때 100% 인정
- 2) 저자수가 2명 이상일 때, 저자의 역할에 따라 인정
 - 가)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인정비율 $2/(N+2) \times 100\%$, 공동저자 실적 $= 1/(n+2) \times 100\%$
 - 나) 저자 구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저서출판 실적

- 1) 단독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00% 인정
- 2) 공동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인정비율 $1/n \times 100\%$ (저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로 처리)

다. 캡스톤디자인 특허 실적

- 1) 캡스톤디자인활동에 의한 결과물로 특허등록이 된경우에 한하며,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저자: 일반적으로 학술논문 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제1 저자 - 교신저자: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저자 - 공동저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2) 저서출판 실적

- 가) 단독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00%
- 나) 공동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n \times 100\%$ (저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 등은 제외(단, 저자가 편집저자만 2인 이상 있는 경우 인정)
- 상/하권 개별 실적으로 인정
- 저서는 ISBN이 수록된 신규 출판물만 인정(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편서, 개정증보판은 제외)

2) 점수산정 방법

연구업적 평가 점수	배 점
130점 이상	45점
120점~129점	40점
110점~119점	35점
100점~109점	30점
50점~ 99점	20점
50점 미만	10점

*잉여점수 다음 해에 한해 가산할 수 있다

(2012.2.16.개정)

2. 연구업적 평가기준-산학협력 중점 교원 (2022.12.7.개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	비고
논문	국제 전문학술지	SCI급/SCOPUS 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에 게재된 논문	200	
	국제 일반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로 인정되지 않은 국외 저명 학술지로 업적평가위원회를 통해 국내전문 학술지 이상의 수준이 인정된 논문	100	논문형식으로 A4 기준 15매 이상, 발행지가 외국이고 외국어로 발행된 경우만 인정
	국내 전문학술지	KCI급(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00	
	교내 논문집	신학과신앙, 루터연구	40	
	국내 일반학술지	KCI급 학술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0	
저서	국제 학술저서	국외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 저서 (ISBN)	50	
	국내 학술저서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저서 (ISBN)	50	200page 이상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저서 (ISBN)	30	150page 이상 199page 이하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일반도서 (ISBN)	20	150page 이상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일반도서 (ISBN)	10	100page 이상 149page 이하
		대학교재 및 일반도서 (ISBN))	10	100page 이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	비고	
	번역서	외국어 전공분야 학술서적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 (ISBN)	30		
산학 협력 연구	특허	국제특허등록	250	건당	
		국제특허출원	150		
		국내특허등록	100		
		국내특허출원	80		
		기타 지적재산등록	50		
	연구비 수주 실적	본교 산학 협력단을 통한 연구비 수주 실적	3억원 이상	200	연구책임자에 한함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100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80		
3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0		
창업	교원창업	50	창업시 1회 인정		

1. 연구실적물의 인정 기준

가. 논문 게재 실적

- 1) 저자수가 1인(n=1)일 때 100% 인정
- 2) 저자수가 2명 이상일 때, 저자의 역할에 따라 인정
 - 가)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인정비율 $2/(N+2) \times 100\%$, 공동저자 실적 = $1/(n+2) \times 100\%$
 - 나) 저자 구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저서출판 실적

- 1) 단독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00% 인정
- 2) 공동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인정비율 $1/n \times 100\%$ (저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다. 캡스톤디자인 특허 실적

- 1) 캡스톤디자인활동에 의한 결과물로 특허등록이 된경우에 한하며,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주저자: 일반적으로 학술논문 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제1 저자
- 교신저자: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저자
- 공동저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2) 저서출판 실적

- 가) 단독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00%
- 나) 공동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n \times 100\%$ (저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 등은 제외(단, 저자가 편집저자만 2인 이상 있는 경우 인정)
- 상/하권 개별 실적으로 인정
- 저서는 ISBN이 수록된 신규 출판물만 인정(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편서, 개정증보판은 제외)

2) 점수산정 방법

연구업적 평가 점수	배 점
130점 이상	45점
120점~129점	40점
110점~119점	35점
100점~109점	30점
50점~ 99점	20점
50점 미만	10점

*잉여점수 다음 해에 한해 가산할 수 있다

(2012.2.16.개정),(2022.12.7.개정)

3. 연구업적 평가기준-행정 중점교원 (2022.12.7.개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	비고	
논문	국제 술지	전문학	SCI급/SCOPUS 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에 게재된 논문	200	
	국제 술지	일반학	국제전문학술지로 인정되지 않은 국외 저명 학술지로 업적평가위원회를 통해 국내전문 학술지 이상의 수준이 인정된 논문	100	논문형식으로 A4 기준 15매 이상, 발행지가 외국이고 외국어로 발행된 경우만 인정
	국내 술지	전문학	KCI급(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00	
		박사학위논문	학교발전 관련 박사학위논문(추가학위 취득자)	100	학업개시 6개월전 대학발전과 관련된 학교발전 학업계획서[별지양식3]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발전계획추진 위원회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 경우
		교내 논문집	신학과신앙, 루터연구	40	
		국내	KCI급 학술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30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일반학술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타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저서	국제 학술저서	국외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 저서 (ISBN)	50		
	국내 학술저서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저서 (ISBN)	50	200page 이상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술저서 (ISBN)	30	150page 이상 199page 이하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일반도서 (ISBN)	20	150page 이상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일반도서 (ISBN)	10	100page 이상 149page 이하	
	번역서	대학교재 및 일반도서 (ISBN)) 외국어 전공분야 학술서적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 (ISBN)	10 30	100page 이상	
산학 연구	특허	캡스톤디자인 특허	150		
	연구비 수주 실적	본교 산학 협력 단을 통한 연구비 수주 실적	3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00 100 80	연구책임자에 한함
			3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0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인증보고서	대학평가 보고서	대학기본역량진단(총괄)	200	단, 평가 통과시 인정 중복 위원인 경우 하나만 업적으로 인정	
		대학기본역량진단(부총괄, 영역총괄)	150		
		대학기본역량진단(연구위원)	100		
		대학기본역량진단(실무위원)	50		
	국책사업 보고서	사업계획서 작성	50	추가(건당)	
		결과보고서 작성			
		연구과제 수행 보고서 작성(연구비수혜자)			
	인증보고서	대학기관평가인증(총괄)	200	단, 평가 통과시 인정 중복 위원인 경우 하나만 업적으로 인정	
		대학기관평가인증(기획위원)	150		
		대학기관평가인증(연구위원)	100		
대학기관평가인증(실무위원)		50			
교내 보고서	교내 보고서(연구비 미수혜자)	40	-추가(건당)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증빙된 실적만 인정 가능		

1. 연구실적물의 인정 기준

가. 논문 게재 실적

1) 저자수가 1인(n=1)일 때 100% 인정

2) 저자수가 2명 이상일 때, 저자의 역할에 따라 인정

가)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인정비율 $2/(N+2) \times 100\%$, 공동저자 실적 $= 1/(n+2) \times 100\%$

나) 저자 구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저서출판 실적

1) 단독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00% 인정

2) 공동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인정비율 $1/n \times 100\%$ (저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 으로 처리)

다. 캠프스톤디자인 특허 실적

1) 캠프스톤디자인활동에 의한 결과물로 특허등록이 된경우에 한하며,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주저자: 일반적으로 학술논문 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제1 저자
- 교신저자: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저자
- 공동저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2) 저서출판 실적

가) 단독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00%

나) 공동저술인 경우, 저술출판 실적은 $1/n \times 100\%$ (저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 으로 처리)

-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 등은 제외(단, 저자가 편집저자만 2인 이상 있는 경우 인정)
- 상/하권 개별 실적으로 인정
- 저서는 ISBN이 수록된 신규 출판물만 인정(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편서, 개정증보판은 제외)

2) 점수산정 방법

연구업적 평가 점수	배 점
130점 이상	45점
120점~129점	40점
110점~119점	35점
100점~109점	30점
50점~ 99점	20점
50점 미만	10점

*잉여점수 다음 해에 한해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2012.2.16.개정),(2017.2.27.개정),(2017.12.22.개정),(2020.02.25.개정),(2022.2.10.개정),(2022.12.7.개정)

1. 봉사업적 평가기준-교육 중점교원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교내 활동	교내행정 기여	보직 교수	주요보직자 (책임시수 감면자)	10	
			일반 보직자	5	
		일반 교수(지도교수)	2		
	대학발전 기여	대학 평가, 입시TF 업무 참여		20	기획조정처 및 디아코니아 인재개발센터에서 증빙된 실적만 가능
	교내 봉사	디아코니아센터 참여 실적 *고교입시홍보방문 제외	40시간 이상	40	디아코니아센터에서 증빙된 실적만 가능함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0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15	
	종교활동	루터교회 출석 확인서류		10	
	입시 및 홍보지원(**)	고교 및 전문대 특강(건당)		10	디아코니아 인재개발센터에서 증빙된 실적만 인정가능
		중고교 방문(입학주관부서 인정)(건당)		3	
기관방문 및 입시박람회 참여 (건당)		3			
입시 면접 참여(건당)		2			
우수 신(편)입생 유치(최종등록 후 당해연도 10.1일자 재학시 인정)(명당 10점)					
교외 활동	공공기관 봉사	정부공공기관 자문(연구)위원		2	
		비영리, 사회, 종교단체 활동		2	
		학술단체 임원		2	
	기타 활동	타 대학 논문심사		2	
		국제기관 봉사활동		2	
		전국규모대회 심사위원		2	
		대학평가 인정 관련 활동		5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2	
		수상, 서훈, 포상		5	

- 점수 산정 방법: 취득점수/100 x 10

*참조: 종교활동 및 교외 공공기관봉사는 출석교회 및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류로 증빙함

**입시 및 홍보지원 항목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봉사업적(명당 10점)으로 인정 또는 연구업적(2년 기준 8명 유치시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 1편으로 인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 봉사업적 평가기준-산학협력 중점교원 (2022.12.7.개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산학협력 봉사활동	장학금 유치/출연	3천 만원 이상	50	최대 40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0		
	산학재정 기여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0		
	산업체 기술지도 경영자문	건당 5점			
	가족기업 유치	건당 5점			
	가족기업 방문	건당 10점			
	산학협의회 운영	건당 20점			
교내 활동	교내 봉사	디아코니아센터 참여 실적 *고교입시홍보방문 제외	40시간 이상	40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증빙된 실 적만 가능 함
			30시간 이상~40시 간 미만	30	
			15시간 이상~30시 간 미만	15	
	종교활동	루터교회 출석 확인서류	10		
	입시 및 홍보지원(**)	고교 및 전문대 특강(건당)	10	디아코니아 인재개발센 터에서 증 빙된 실적 만 인정가 능	
		중고교 방문(입학주관부서 인정)(건당)	3		
		기관방문 및 입시박람회 참여 (건당)	3		
입시 면접 참여(건당)		2			
우수 신(편)입생 유치(최종등록 후 당해연도 10.1일자 재학시 인정)(명당 10점)					
교외 활동	공공 기관 봉사	정부공공기관 자문(연구)위원	2		
		비영리, 사회, 종교단체 활동	2		
		학술단체 임원	2		
	기타 활동	타 대학 논문심사	2		
		국제기관 봉사활동	2		
		전국규모대회 심사위원	2		
		대학평가 인정 관련 활동	5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2		
		수상, 서훈, 포상	5		
- 점수 산정 방법: 취득점수/100 x 45					
*참조: 종교활동 및 교외 공공기관봉사는 출석교회 및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류로 증빙함					
**입시 및 홍보지원 항목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봉사업적(명당 10점)으로 인정 또는 연구업 적(2년 기준 8명 유치시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 1편으로 인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3. 봉사업적 평가기준-행정 중점교원 (2022.12.7.개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교내 활동	교내행정기여	보직교수	주요보직자 (책임시수 감면자)	10	
			일반 보직자	5	
		본부/부속기관 등 소속 실무교수, 전담교수	10		
	대학발전기여	대학 평가(대학기관인증평가, 정부재정지원사업 등)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정하는 활동(건당)		30	
	교내 봉사	디아코니아센터 참여 실적 *고교입시홍보방문 제외	40시간 이상	40	디아코니아센터에서 증빙된 실적만 가능함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0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15	
	종교활동	루터교회 출석 확인서류		10	
	입시 및 홍보지원(**)	고교 및 전문대 특강(건당)		10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에서 증빙된 실적만 인정가능
		중고교 방문(입학주관부서 인정)(건당)		3	
기관방문 및 입시박람회 참여 (건당)		3			
입시 면접 참여(건당)		2			
우수 신(편)입생 유치(최종등록 후 당해연도 10.1일자 재학시 인정)(명당 10점)					
교외 활동	공공기관 봉사	정부공공기관 자문(연구)위원		2	
		비영리, 사회, 종교단체 활동		2	
		학술단체 임원		2	
	기타 활동	타 대학 논문심사		2	
		국제기관 봉사활동		2	
		전국규모대회 심사위원		2	
		대학평가 인정 관련 활동		5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2	
		수상, 서훈, 포상		5	
- 점수 산정 방법: 취득점수/100 x 45					
*참조: 종교활동 및 교외 공공기관봉사는 출석교회 및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류로 증빙함 **입시 및 홍보지원 항목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봉사업적(명당 10점)으로 인정 또는 연구업적(2년 기준 8명 유치시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 1편으로 인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중심평가영역 변경 신청서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평가대상기간	
변경내용	변경 전	<input type="checkbox"/> 교육영역,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영역, <input type="checkbox"/> 행정영역		
	변경 후			
	변경 신청 사유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붙임: 중심평가영역 변경 심사 실적내역 및 계획서 1부. 끝.

교원인사규정 제28조의3, 교원업적평가 관리규정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심평가영역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학과장(학장):

(서명 또는 인)

루터대학교 총장 귀하

중심평가영역 변경 심사 실적내역 및 계획서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평가대상기간	

실적 내역

※ 정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1. 교육/연구/산학협력/행정 기여도-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학생지도에 기여한 정량 등 정성적 성과

2. 대학발전 기여도 - 대학평가, 재정지원사업 수주, 학교홍보, 장학금 유치 등 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높이거나, 대학 재정에 기여한 정량, 정성적 성과

향후 계획

※ 정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별지 첨부 가능

1. 대학발전 기여 부분
 - 예) 대학평가, 재정지원사업 수주, 학교홍보, 장학금 유치 등 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높이거나, 대학 재정에 기여할 가능성

2. 소속 학과/대학 또는 기관 기여도 부분 작성
 - 예) 취업율, 재학율, 총원율 등 소속 기관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거나, 재정적 가치를 높일 가능성

3. 교육/연구/산학협력/행정 기여 부분
 - 예)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학생지도의 참신성, 혁신성, 미래 가능성

위와 같이 중심평가영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루터대학교 총장 귀하

학교발전 관련 학업계획서

인적사항	소속		성명	
학교명	학위과정		전공명	
학업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년 월)			
필요성 및 목표				
대학 발전 기여 방안	※ 세부 계획은 별지추가 작성 가능			

위 본인은 교원으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와 같이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교수명: (서명)

소속 학과장(학장): (서명)